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1491-14

국회입법조사처

NARS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18호 2016. 9. 2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현황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보고서 Vol. 18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현황과 개선방향

장영주(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2016. 9. 2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4. 7.
초고 작성기간	2016. 4. 7. ~ 2016. 8. 3.
초안 검토	산업자원팀 김봉주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8월 10일(수) 오후 3시 – 실무위원: 임동춘 경제산업조사실장 직무대리 김대은, 김봉주, 이수기 팀장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9월 5일(월) 오후 3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발 간 사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또는 수년간에 걸친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수행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정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언급된 사항들 중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요 약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라 함)는 2015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이라 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게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관련된 총 10건(농림축산식품부 3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

○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 전략 마련(2건), 할랄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2건), 신선식품 수출 증대(1건),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증가(1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4건)와 관련된 시정요구임

□ 한류문화의 확산과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식 하에 국회 농해수위의 시정요구는 농식품 수출의 양적 성장과 함께 그 성과가 국내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하자는 취지임

□ 총 10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처리결과의 점검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액, 수출대상국 수, 수출품목의 변화 동향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현황 등을 분석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이 보고한 2015년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를 점검한 결과 농식품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수출구조의 변화 및 지원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었음

□ 2015년 국감에서 지적한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처리결과보고는 수출대상국가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수출인프라 지원의 다양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내실화 측면에서 평가하

였음

○ 첫째, 연 1억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 수가 2015년 13개국으로 전년 대비 1개국 증가하였으나 수출액, 수출품목 등 농식품 수출 규모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둘째, 신선식품 수출의 확대와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 증가에 관한 시정처리결과는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 전략 마련뿐만 아니라 한식의 기본이 되는 수출품목조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개별산업진흥법으로 지원하는 인삼, 김치, 전통주, 차, 쌀 가공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고, 한식의 기본재료인 각종 장류의 수출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셋째,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선은 국감에서 계속되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의 틀은 단순 홍보 및 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선택과 집중 전략 부재, 성과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으로 해외홍보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문제점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인프라의 강화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농식품 수출대상국 확대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액의 증대이므로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에 앞서 일본 등 기존 주요 수출국의 수출 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출 회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은 식품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수출 무역망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므로 식품산업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FTA 체결국의 식품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신선식품 수출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지 공동물류센터 운영, 냉장유통체계를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공동 이용이 용이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 또한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지 시장 기반을 조성하므로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기초로 국내산 원료사용량 증가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할 것임

○ 셋째,「식품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제정된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 산업, 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의 수출 지원 규정이 실제 국내외 수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대출 및 융자위주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자생적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농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국내 수출 농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대행업체, 현지 유통망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전후방 농식품 수출서비스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 다섯째,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수출 성과(수출 물량 및 품목 확대, 신규시장 개척, 시스템 구축)에 근거한 예산 운용과 농식품 해외홍보전시관의 전문성, 상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차 례

□ 요약

Ⅰ. 평가배경 / 1

1. 배경 ····· 1
2. 법령 및 제도 ····· 2
   가. 법령 ····· 2
   나. 제도 ····· 4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 6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6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8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11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11
   가. 수출액 ····· 11
   나. 수출대상국 ····· 12
   다. 수출품목 ····· 14
   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19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2
   가.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 22
   나. 수출품목의 다변화 ····· 25
   다. 수출 인프라 지원의 다양화 ····· 26
   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내실화 ····· 27

Ⅳ. 개선방향 / 30

1. 수출대상국 및 품목의 다변화 ····· 30
2. 수출인프라 지원의 다변화 ····· 31
3.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내실화 ····· 33

□ 참고문헌

□ 부록

1. 식품산업별 수출 촉진 관련 규정 ····· 36
2.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련 국감 시정조치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39

표 차 례

[표 1]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의 주요내용 ····· 5
[표 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국감시정요구사항(2015년) ····· 7
[표 3]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국감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 8
[표 4]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 추이 ····· 12
[표 5] 국가별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출현황(금액) ····· 13
[표 6] 연도별 농식품 수출 1억 달러 이상 수출국가의 수출현황 ····· 14
[표 7]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위 품목 ····· 15
[표 8] 연도별 개별산업진흥법으로 지원하는 농식품의 수출액 ····· 16
[표 9] 연도별 신선 농식품류의 수출현황 ····· 17
[표 10]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 ····· 18
[표 11]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출 비율(금액) ····· 19
[표 12]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예산 현황(2012~2016년) ····· 20
[표 13] 농식품 수출기업 현황(2015년) ····· 27
[표 14] 글로벌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실적 증가율(2013~2014년) ····· 28

Ⅰ. 평가배경

1. 배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라 함)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1] 대상 2015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이라 함)에서 농식품[2]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시정요구하였음

□ 한류문화의 확산과 세계적인 식품산업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수출액의 증가 정책 추진과 함께 농식품 수출시장 및 수출 구조의 다변화로 수출 성과가 국내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인식임

□ 세계 식품산업 시장의 성장과 한류 문화의 확산이라는 국내산 농식품 수출에 유리한 외적 환경이나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은 성장이 둔화된 상황임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그 가공품) 수출액은 6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감소하였음[3]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법」 제10조제5호에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음

2) 본 보고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함

3) 2015년 농식품 수출실적(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80억 3,300

○ 식품산업의 주원료인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로 농식품 무역수지는 2010년 199억 달러에서 2015년 267억 달러로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국내산 농식품 및 가공품의 수출을 증대하고, 무역수지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기로에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100억 달러, 2022년까지 150억 달러 달성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는 수출 시장과 수출전략품목의 다양화를 통해 소품종 소량생산 위주인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활로를 찾는 전략임

□ 이에 본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추진결과와 계획을 근간으로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음

2. 법령 및 제도

가.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규정에 의거, 농식품 수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백만 달러 수준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식품산업[4]의 수출 지원 근거는「식품산업 진흥법」,「외식산업 진흥법」및 식품품목별 산업 진흥에 관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산업 진흥법」제10조에서 국제교류 및 무역 진흥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식품산업 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 진흥법」을 근거로,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각 개별법에 두고 있는 산업은 인삼산업, 김치산업, 전통주산업, 차(茶)산업, 쌀 가공산업, 친환경식품산업과 외식산업임([부록 1] 참고)

- 인삼산업은「인삼 산업법」제20조의2, 김치산업은「김치산업 진흥법」제17조, 전통주산업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차(茶)산업은「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쌀 가공

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6조(식품산업의 범위)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산업은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이들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함

산업은「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친환경 식품산업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외식산업은「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에서 각각 수출 촉진, 해외진출 지원, 수출 지원, 세계화 촉진 등의 규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농산물유통기금사업으로, 예산지원의 근거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제2호[5]에 의함

나. 제도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시행을,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식품산업진흥법」의 '식품산업진흥계획'에 따라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5)「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역할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법」 제10조의 5호에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임

□ 2015년까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수출단계별로 5개 부문 29개 세부지원사업으로 분류[6]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표 1] 참고)

[표 1]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의 주요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ㅇ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 ㅇ 수출전문단지육성: 인증, 안정성검사, 검역 ㅇ 수출선도조직육성 및 수출업체맞춤지원: 수출물류비, 품질관리 ㅇ 기반조성, 검역·통관·보험, 수출협의회운영 등
가공식품 수출 지원	ㅇ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 ㅇ 내수식품업체 수출시장 진입지원·시장진입초기 수출업체지원 ㅇ 성장단계 수출업체지원: 수출물류비, 수출컨설팅, 통관·보험·인증, 마케팅 지원 등
수출인프라 강화	ㅇ 수출농식품홍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K-Food Fair 개최지원, 온라인·모바일 마케팅, 수출농식품홍보관 운영, 안테나숍 운영, 재외공관 홍보, 미디어마케팅, 지자체공동마케팅 해외정보조사 및 제공 ㅇ 외식산업수출지원: 식문화홍보, 해외진출협의체운영, 외식프랜차이즈박람회 콜드체인 구축 ㅇ 민관수출협의회운영: 수출개척협의회 등 운영, 수출탑시상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사업설명서」, 2015. 10.

6) 농식품 수출단계별 지원 부문은 가공식품 생산, 수출 조직 부문,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부문, 수출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부문, 가공식품 수출 물류, 검역, 통관 부문, 수출 금융 보험부문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지적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3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7건임 ([표 2] 참고)

○ 정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게는 할랄 인증 지원 및 공동물류센터 추가 운영과 김치의 경쟁력 제고와 중국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시정요구함

○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게는 중국으로의 김치수출 전략 마련, 온라인 수출지원사업 인력 확충과 신선농산물 입점 확대, 국내산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할랄시장 수출 지원, 해외식품무역전시장의 운영 내실화 등을 시정요구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식품수출유통공사 대상 국감에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된 시정요구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액의 증가와 함께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 구조의 체질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의 시정요구임

○ 2012년 국감에서는 수출대상국 수의 확대를, 2013년 국감에서는 농식품 수출제품의 국산원재료 사용 확대를, 2014년 국감에서는 농식품 수출 지원 인프라(인력, 조직) 확대, 중국시장 수출 확대, 해외 식품박람회 개선, 농민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수출제품 개발 등을 시정요구함

[표 2]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국감시정요구사항(2015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2015년 국감시정요구사항	
● 피감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일시: 2015년 9월 10일, 10월 8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 피감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일시: 2015년 9월 15일 ●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피감기관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 UAE나 인도네시아 등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할랄 국가에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를 추가 운영할 것 -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내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수출 대상국 별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변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통채널 확보 등 면밀한 김치 수출전략 마련할 것 - 알리바바 등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추진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 국내산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품목에 수출지원 집중 필요 - 알리바바 티몰 한국관 개설 및 입점관련 가공식품보다는 신선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가공식품의 입점 확대 필요 - 할랄시장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수출지원 필요 - 식품무역전시장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되므로 대기업 행사나 명품옷 전시 비율이 65%가 넘는 것은 시정할 필요

자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6.5.를 정리함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2015년 국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농해수위에 제출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은 [표 3]과 같음[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자료 중 해외시장 개척 지원관련 시정처리결과는 [부록 2]에 정리함

[표 3]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국감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피감 기관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	UAE나 인도네시아 등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할랄 국가에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를 추가 운영할 것	<시정·처리결과> □ 현재 동남아시아 대표 할랄식품 시장인 말레이시아에 해외공동물류센터 1개소 지정·운영 중 <향후 추진계획> □ UAE 등 할랄국가에 추가 공동물류센터 지정 추진
	국산 김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내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對중국 김치 수출 재개에 맞춰 '김치 수출 확대 방안' 수립('15.12.29.) ○ 수출국 맞춤형 지원, 수출인프라 구축 등 - 온·오프라인 김치 판매채널 개척,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물류·통관 등 수출기반 지원, 수출정보(시장동향, 수출입제도 등) 제공 * 中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적용(11.19) 결정에 따라 '15.12월 수출 재개 <향후 추진계획> □ 추진전략, 일정에 맞춰 정책과제 추진

7) 대한민국 정부, 「20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보고서」, 2016.6.을 정리함

피감 기관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대상국별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내인증기관(한국이슬람교중앙회)과 해외인증기관과의 교차인정 확대를 통해 할랄인증 애로사항 해소 추진 중 * 교차인정 국가: 말레이시아 JAKIM('13.7~), 싱가포르 MUIS('15.12~) <향후 추진계획> □ 인도네시아 MUI, UAE ESMA 등과도 상호 교차인정 추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변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통채널 확보 등 면밀한 김치 수출전략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대중국 농식품 수출 18억불 달성을 위한 수출확대 전략 수립(‘16.4.15) ○ 김치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강화 - 김치/쌀, 김치/라면과 연계한 콜라보레이션 홍보, 스토리텔링 마케팅 등 □ 중화권 김치시장 조사 결과 수출업체 정보제공(‘15.12.15) ○ 5개권역별(북경, 상해, 내륙, 홍콩, 대만) 김치 생산·유통·판매동향 등 □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중국 김치 수입 바이어 초청 상담회 추진 (‘15.12.15) ○ 중국 각 지역 대표 냉장·냉동식품 바이어를 국내 초청(13개사)하여 김치 수출업체(대상FNF, 한성식품 등 15개사)와의 거래알선 지원 <향후 추진계획> □ 한국산 김치 판매망 구축을 위한 모바일 판촉 추진(9월~10월) □ 중국 요리학교 연계 김치 레시피 개발 및 레시피북 발간·배포(10월) □ 중국지역 박람회 김치 홍보관 운영 및 문화원 연계 김치 홍보 등 김치 알리기 추진(연중)

피감 기관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품목에 수출지원 집중 필요	<시정·처리결과> □ 재배단계에 마켓테스트까지 신규수출품목 발굴·육성을 위한 "미래클" 프로젝트 추진 ○ 샤인머스켓(신품종포도), 당조고추(신품종 기능성 고추) 및 청귤음료(접과후 청귤활용 가공), 건조과일(감귤 등) □ 생산자의 수출 마케팅 파워 제고 위해 현재 수출업체 중심 수출선도조직에서 품목별 생산자 참여 중심으로 확대 운용 ○ 기존 수출선도조직 지원자격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조직 신선품목 확대 ※ (주력품목 7) 파프리카, 버섯류, 사과 등 ※ (확대품목 4) 양배추, 백합, 배 등 <향후 추진계획> □ 신선 농산물 중심의 수출선도조직 신규 품목 지속 발굴 ○ 수출확대 및 규모화·조직화가 가능한 토마토, 포도 등 품목 발굴 □ 미래클 프로젝트 지속추진으로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지원 지속추진
	국내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국산 신선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 장려를 위해 액상차, 과채가공품 등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수출 정책자금 금리 우대 지원 방안과 연계를 위한 국산 원료구매 평가비중 상향조정 ○ 지원액 대비 국산원료 구매액 비중 가중치 확대(20점→25점) □ 국산원료 사용업체 수출상품화 사업 선정우대(국산원료 사용실적 계량평가항목 신설) <향후 추진계획> □ 국산원료로 가공한 신규 수출품목 발굴·육성사업 지속 추진 (연중) □ 국내 외식브랜드 해외 박람회 참가, K-FOOD Fair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속 추진으로 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지속 지원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2015년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 관련 국감시정요구사항 총 10건(농림축산식품부 3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7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처리결과의 점검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액, 수출대상국, 수출품목의 변화 동향과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현황 등 농식품 수출 다변화 성과를 점검하였음

가. 수출액

□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농식품 수출액 목표액은 76.6억 달러였으나 실제 수출액은 61.1억 달러로 목표달성률은 79.8%에 그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총액은 2012년 56.5억 달러에서 2015년 61.1억 달러로 3년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표 4] 참고)

○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2012년 47.9억 달러에서 2015년 52.2억 달러로 9.7% 증가하였으나, 2014년 대비 2015년 수출금액은 증가하지 않았음

○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7.0%에서 2015년 8.1%로 증가하였음

- 2012년 39.5억 달러에서 2015년 49.7억 달러로 25.8% 증가하였음

○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2년 4.7억 달러에서 2015년 3.9억 달러로 16.8% 감소하였음

[표 4] 2012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계
2012	4,785	395	465	5,645
2013	4,741	436	548	5,725
2014	5,224	470	489	6,183
2015	5,224	497	387	6,108
2015/2012 증감률(%)	9.7%	25.8%	△16.8%	8.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5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16., p.83.을 재정리함

나. 수출대상국

□ 전체 농식품수출금액의 10%를 상회하는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으로 2015년 농식품 수출액 전체의 46.6%임([표 5] 참고)

○ 이들 3개국이 차지하는 수출액비율은 2012년 49.4%에서 2015년 46.6%로 감소하는 동향임

- 제1수출국인 일본의 수출비중이 2012년 24.9%에서 2015년 19.1%로 5.8%p 감소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5년 수출액도 감소하였음

○ 제2수출국인 중국은 2012년 16.1%에서 2015년 17.2%로 0.9%p 증가하였음

- 2014년 대비 2015년 수출액도 증가하였으며 일본과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음

□ 중국과 함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수출액 제3위인 미국과 아세안, 이슬람국가, 그리고 유럽연합 등 유사 식문화를 가진 지역임

○ 농식품 수출액 제3위인 미국은 FTA 체결 이후 2011년 7.8%에서 2015년 10.7%로 2.9%p 증가하였음

[표 5] 국가별 농식품(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출현황(금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일본	752 (24.7)	846 (25.7)	1,023 (25.1)	1,381 (25.7)	1,408 (24.9)	1,287 (22.5)	1,316 (21.3)	1,168 (19.1)
중국	349 (11.4)	420 (12.7)	556 (13.6)	915 (17.0)	906 (16.1)	948 (16.6)	987 (16.0)	1,048 (17.2)
미국	335 (11.0)	338 (10.2)	377 (9.2)	419 (7.8)	473 (8.4)	523 (9.1)	594 (9.6)	628 (10.3)
러시아	286 (9.4)	222 (6.7)	230 (5.6)	237 (4.4)	251 (4.4)	244 (4.3)	222 (3.6)	130 (2.1)
홍콩	163 (5.3)	183 (5.5)	216 (5.3)	274 (5.1)	269 (4.8)	346 (6.0)	369 (6.0)	348 (5.7)
대만	107 (3.5)	137 (4.2)	189 (4.6)	235 (4.4)	225 (4.0)	235 (4.1)	236 (3.8)	256 (4.2)
아세안	271 (8.9)	325 (9.9)	522 (12.8)	756 (14.0)	828 (14.7)	985 (17.2)	1,054 (17.0)	1,028 (16.8)
EU	243 (8.0)	162 (4.9)	204 (5.0)	265 (4.9)	312 (5.5)	298 (5.2)	323 (5.2)	336 (5.5)
이슬람 국가	513 (16.8)	519 (15.7)	640 (15.7)	748 (13.9)	796 (14.1)	669 (11.7)	864 (14.0)	839 (13.7)
기타	29 (1.0)	146 (4.4)	125 (3.1)	154 (2.9)	177 (3.1)	190 (3.3)	218 (3.5)	326 (5.3)
전체	3,048 (100.0)	3,298 (100.0)	4,082 (100.0)	5,384 (100.0)	5,645 (100.0)	5,725 (100.0)	6,183 (100.0)	6,107 (100.0)

주 1) 아세안(ASEAN)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 총 10개국임

주 2)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operation)로, 2011년 현재 57개 이슬람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식품산업 통계」(www.afis.or.kr, 2016년 7월 28일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결과」, 2016.5.23.을 재정리함

□ 연 1억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 수는 2008년 8개국에서 2012년 10개국, 2015년 13개국으로 증가하였음([표 6] 참고)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관련 국감시정요구 이후인 최근 3년간(2013~2015년) 수출액 감소 폭이 큰 국가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으로 각각 41.1%, 16.6%, 11.2% 감소함

[표 6] 연도별 농식품 수출 1억 달러 이상 수출국가의 수출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08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일본	7.5	일본	14.1	일본	12.9	일본	13.2	일본	11.7
2	중국	3.5	중국	9.1	중국	9.5	중국	9.8	중국	10.5
3	미국	3.4	미국	4.7	미국	5.2	미국	5.9	미국	6.3
4	러시아	2.9	베트남	2.8	베트남	3.5	홍콩	3.7	베트남	3.7
5	홍콩	1.6	홍콩	2.7	홍콩	3.5	베트남	3.6	홍콩	3.5
6	UAE	1.2	러시아	2.54	러시아	2.4	UAE	3.0	UAE	3.3
7	대만	1.1	대만	2.3	대만	2.3	대만	2.4	대만	2.6
8	이라크	1.1	UAE	2.2	UAE	1.9	러시아	2.2	호주	1.5
9			인도네시아	1.4	인도네시아	1.5	인도네시아	1.8	인도네시아	1.5
10			필리핀	1.1	필리핀	1.3	필리핀	1.4	필리핀	1.3
11					싱가포르	1.1	싱가포르	1.1	러시아	1.3
12							호주	1.1	싱가포르	1.1
13									캐나다	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식품산업 통계」,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결과」, 2016.5.23.을 재정리함

다. 수출품목

□ 2015년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위 품목을 살펴보면 1위는 궐련(담배)이 8억 8,720만 달러로 전체의 14.5%를 차지하고,[8] 그 다음은 음료, 커피조제품, 라면, 인삼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7] 참고)

8) 궐련은 농식품 수출 1위이나 식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식품 수출통계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농식품을 포함한 식품통계는 정부의 사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목적도 있지만 관련 정책의 대상 및 수혜자인 국민에게 관련 산업의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임

○ 2012~2015년 기간동안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은 2012~2013년 10위였던 김치가 2014~2015년 조제분유로 대체된 것 외에는 변동이 없었음

○ 2015년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궐련을 제외하면 국내산 신선농식품류(가공품 포함)는 인삼이 유일함

- 인삼류의 수출비율은 2013년 31%에서 2015년 2.5%로 감소하였고, 김치류의 경우 2013년 이후 10위권 밖에 위치하는 등 국내산 신선농식품류의 수출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표 7]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상위 10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2012	2013	2014	2015
1위	궐련 606.4(10.7%)	궐련 524.9(9.2%)	궐련 669.1(10.8%)	궐련 887.2(14.5%)
2위	커피조제품 297.2(5.3%)	커피조제품 306.1(5.3%)	커피조제품 303.3(5.0%)	음료 293.7(4.8%)
3위	설탕 262.9(4.7%)	음료 243.5(4.3%)	음료 281.7(4.6%)	커피조제품 272.3(4.5%)
4위	음료 225.9(4.0%)	라면 212.5(3.7%)	라면 208.5(3.4%)	라면 218.8(3.6%)
5위	라면 206.2(3.7%)	설탕 203.1(3.5%)	인삼 183.5(3.0%)	인삼 155.1(2.5%)
6위	인삼 150.8(2.7%)	인삼 174.9(3.1%)	설탕 173.0(2.8%)	설탕 151.4(2.5%)
7위	제3맥주1) 144.3(2.6%)	제3맥주 139.8(2.4%)	비스킷 151.8(2.5%)	비스킷 150.0(2.5%)
8위	소주 126.8(2.2%)	비스킷 132.5(2.3%)	제3맥주 142.2(2.3%)	제3맥주 119.3(2.0%)
9위	비스킷 108.9(1.9%)	소주 107.5(1.9%)	대두박 104.1(1.7%)	조제분유 112.6(1.8%)
10위	김치 106.6(1.9%)	김치 89.3(1.6%)	소주 99.5(1.6%)	소주 87.8(1.4%)

주: 일본에서는 맥주를 '맥주(ビール)', '발포주', '제3맥주'로 구분하는데, 제3맥주는 맥아(보리)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맥주로 일반 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세금도 적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연도.

□ 최근 3년간(2013~2015년) 개별산업진흥법으로 지원하는 농식품 품목의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쌀, 청주, 식혜, 고추장의 수출은 각각 21.2%, 11.2%, 27.3%, 14.1% 증가하였음([표 8] 참고)

○ 반면, 인삼류, 김치류, 막걸리, 약주, 녹차류는 각각 12.8%, 21.5%, 46.5%, 33.3%,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한식세계화사업 및 외식산업 진흥사업과 연관된 한식의 기본재료인 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식초 등)는 2014년 이후 수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표 8] 연도별 개별산업진흥법으로 지원하는 농식품의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3	2014	2015	2015/2013 증감률
인삼	174.9	183.5	155.1	△12.8
쌀	4.1	4.7	5.2	21.2
김치	89.3	84.0	73.5	△21.5
막걸리	18.9	15.4	12.9	△46.5
청주	1.27	1.37	1.43	11.2
약주	1.20	1.14	0.90	△33.3
고추장	24.3	28.7	28.3	14.1
간장	15.3	13.5	13.1	△16.8
된장	6.7	7.9	7.6	11.8
기타장	7.2	8.3	6.8	△5.9
메주	0.02	0.04	0.06	66.7
녹차	4.1	2.3	3.1	△32.3
식혜	0.8	1.0	1.1	27.3
식초	6.1	5.8	6.8	10.3
두부	1.1	1.6	3.0	63.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동향 및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16, pp.85~97.를 재정리함

□ 신선식품 중 수출금액 면에서 1위는 인삼류미며, 2위는 파프리카, 그리고 배, 딸기의 순이었음([표 9] 참고)

○ 2012년 이후 수출품목이 신선 채소와 과일에서 채소종자와 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등으로 농식품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음

[표 9] 연도별 신선 농식품류의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08	2012	2013	2014	2015
특용작물류	인삼	금액	97.3	150.8	174.9	183.5	155.1
		물량	2.1	4.4	5.1	5.8	5.9
채소류	파프리카	금액	54.2	88.8	87.0	79.6	85.2
		물량	17.1	20.8	22.1	23.1	29.4
	채소종자	금액	22.5	40.4	40.3	39.3	45.9
		물량	0.5	0.5	0.6	0.5	0.5
과실류	딸기	금액	11.7	24.3	29.8	33.4	34.0
		물량	1.6	2.5	3.1	3.7	3.7
	멜론	금액	2.4	4.9	4.1	3.6	3.7
		물량	1.0	1.6	1.1	1.1	1.4
	토마토	금액	4.8	12.9	14.2	13.7	12.6
		물량	1.7	4.2	5.5	5.5	5.7
	배	금액	47.4	50.0	55.0	62.3	58.4
		물량	23.7	15.7	20.2	23.1	22.7
	사과	금액	9.4	5.9	7.4	5.8	8.7
		물량	4.7	1.9	3.0	2.4	3.7
	단감	금액	7.4	12.8	10.4	12.9	11.2
		물량	7.4	8.7	7.4	8.4	8.6
	감귤	금액	1.9	4.7	5.3	4.0	3.3
		물량	2.5	3.6	3.7	3.0	2.8
	밤	금액	26.5	36.0	328	23.2	17.3
		물량	12.6	11.3	12.8	10.6	8.5
버섯류	팽이버섯	금액	11.3	16.9	19.5	18.1	16.4
		물량	6.2	10.2	11.4	10.2	9.2
	새송이 버섯	금액	7.3	12.5	14.2	14.5	15,.6
		물량	2.0	3.4	3.9	4.1	4.8
축산물	닭고기	금액	12.8	35.8	37.1	33.4	41.7
		물량	9.3	20.9	26.1	19.3	26.4
	오리고기	금액	0.1	5.3	4.2	0.7	4.8
		물량	0.1	7.8	6.7	0.8	3.1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 통계」(www.afis.or.kr, 2016년 7월 28일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결과」, 2016.5.23.를 재분류하여 정리함

□ 신선채소를 원료로 한 채소가공식품은 김치, 과일가공식품은 유자차, 축산가공식품은 조제분유, 곡류 가공식품은 소주, 막걸리, 라면, 비스킷, 음료류는 커피조제품과 가공음료, 양념류는 설탕, 마요네즈, 고추장의 수출이 증가하였음([표 10] 참고)

[표 10]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08	2012	2013	2014	2015
채소가공	김치	금액	85.3	106.7	89.3	84.0	73.5
		물량	26.9	27.7	25.6	24.7	23.1
과일가공	유자차	금액	27.1	40.8	43.0	43.0	41.5
		물량	9.8	13.1	14.2	14.7	14.9
축산가공	조제분유	금액	24.0	57.1	69.9	91.0	112.6
		물량	2.7	5.6	6.3	7.6	9.3
곡류가공	소주	금액	124.1	126.8	107.5	99.5	87.8
		물량	88.8	77.7	77.6	74.3	72.1
	맥주	금액	43.3	67.8	72.3	73.2	84.5
		물량	74.5	104.9	113.2	111.0	124.0
	제3맥주	금액	33.4	144.3	139.8	142.2	119.3
		물량	49.4	187.3	197.1	205.4	193.5
	막걸리	금액	4.4	36.9	18.9	15.4	12.9
		물량	5.5	30.7	18.2	15.5	13.9
	라면	금액	129.5	206.2	212.5	208.5	218.8
		물량	32.2	46.5	49.1	48.8	55.4
	비스킷	금액	59.9	108.9	132.5	151.8	150.0
		물량	13.1	19,.4	21.0	22.9	25.0
음료	커피조제품	금액	196.0	297.2	306.1	303.3	272.3
		물량	56.0	77.4	80.2	75.4	72.3
	음료	금액	64.4	225.9	243.5	281.7	293.6
		물량	68.4	237.7	250.4	296.2	313.4
양념	설탕	금액	127.7	262.9	203.1	173.0	151.4
		물량	285.2	359.6	339.6	306.3	305.3
	마요네즈	금액	46.5	37.8	36.6	28.8	13.9
		물량	21.6	15.2	15.3	13.4	7.5
	고추장	금액	9.4	23.7	24.3	28.7	28.3
		물량	4.5	10.0	10.5	11.6	12.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 통계」(www.afis.or.kr, 2016년 7월 28일 검색);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결과」, 2016.5.23.를 재분류하여 정리함

□ 2015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관련 주요지적사항인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신선식품의 비율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22.1%에서 2012년 19.1%, 2015년 16.4%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2008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였음([표 11] 참고)

○ 이는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표 11]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출 비율(금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금액	3,048.2	3,298.1	4,081.8	5,383.5	5,644.8	5,724.6	6,182.7	6,107.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선식품	금액	675.0	739.3	873.9	1,015.3	1,079.4	1,180.5	1,121.3	1,003.0
	비율	22.1	22.4	21.4	18.9	19.1	20.6	18.1	16.4
가공식품	금액	2,373.2	2,558.8	3,207.9	4,368.2	4,565.4	4,544.1	5,061.4	5,104.3
	비율	77.9	77.6	78.6	81.1	80.9	79.4	81.9	8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시장 확대 결과」, 2016.5.2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6.2.5.를 재정리함

□ 식품제조업체의 국산원재료(농축수산물) 사용 현황은 2012년부터 매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표되고 있음

○ 식품가공제조업체의 국산원료 사용률은 2012년 21.2%, 2013년 29.7%, 2014년 31.2%, 2015년 31.3%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라. 해외시장 개척 지원

□ 2015년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관련 국감 시정요구사항 중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다변화에 대한 요구사항은 수출대상국 현지 물류센터 개설, 식품박람회 및 전시홍보관 운영 내실화, 전담인력 확충예산 확보,

할랄 인증 지원 등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임

○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정처리 결과보고는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보고된 바, 관련예산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점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예산은 2012년 3,966억 원, 2013년 4,605억 원, 2014년 4,668억 원, 2015년 5,872억 원, 2016년 5,657억 원으로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2016년 소폭 감소하였음([표 12] 참고)

○ 전체 농식품수출촉진사업 예산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수출인프라강화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7.9%, 2013년 6.1%, 2014년 7.1%, 2015년 6.5%였다가 2016년에는 소폭 증가한 7.0% 수준이었음

[표 12]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예산 현황(2012~201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사업예산	계
2012	식품운영활성화지원	365,200(92.1%)	396,620 (100.0%)
	해외시장 개척	31,420(7.9%)	
201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417,052(90.6%)	460,462 (100.0%)
	글로벌K-Food 프로젝트	15,410(3.3%)	
	해외시장개척	28,000(6.1%)	
2014	우수농식품구매지원	419,971(90.0%)	466,771 (100.0%)
	글로벌K-Food 프로젝트	13,700(2.9%)	
	해외시장개척	33,100(7.1%)	
2015	신선농산품수출지원	353,362(60.1%)	587,170 (100.0%)
	가공식품수출지원	195,853(33.4%)	
	수출인프라강화	37,955(6.5%)	
2016	신선농산품수출지원	340,286(60.2%)	565,724 (100.0%)
	가공식품수출지원	185,783(32.8%)	
	수출인프라강화	39,655(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5.10.을 재정리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고한 시정조치결과 중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 7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국 김치 수출 확대 전략 마련 및 할랄시장 진출 지원 대책 마련 건은 새시장 개척을 위한 초기단계인 만큼 공동물류센터 설치, 현지 유통 지원, 소비수요조사 등 수출대상국에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다만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 안목의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 농식품 수출 홍보 및 박람회, 전시관 운영 내실화를 지적한 5건에 대한 시정처리 결과는 단순 이행 및 양적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해외 홍보 전략의 단순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9월 농해수위[9]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출한 2012년 국감에서 지적된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대한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해외안테나숍 운영, 신규시장 판촉 개최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이들 사업의 추진 구조가 다변화되지 않고 있음

- 알리바바 등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과 입점 품목의 국내산 식품, 특히 신선농식품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음

9)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근 3년간(2012~2014년도) 국정감사 이행상황 분석」, 2015.9., pp.86~88.

- 식품무역전시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처리결과는 축산가공품 등 입점을 늘리고, 농식품 외 전시물품을 입점하지 않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은 되었으나 향후계획에서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미흡하였음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2015년 국감에서 지적한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수출액의 증가와 함께 수출대상국 및 수출품목의 다변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시정요구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시정처리결과를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 농식품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억 달러 이상 수출대상국 수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8년 8개국에서 2012년 10개국, 2015년 13개국으로 증가하여 국감 시정요구 이후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됨

○ 꾸준한 양적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되나 농식품 수출액의 증대에는 수출대상국가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2013년 이후 아세안(ASEAN), 이슬람국가연합(OIC), 그리고 유럽연합의 수출액 증가는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유사 식문화 지역단위의 접근전략을 병행함으로써 나타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의 긍정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음

□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액은 2015년 전체수출액의 46.6% 수준으로 2012년 49.4%보다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수출대상국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의 다변화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중국과 미국은 FTA 체결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액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에 앞서 기존 수출대상국과 인접국의 식생활 및 식품유통 및 소비형태 분석에 근거한 수출규모 유지 및 확대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평가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으로의 수출 감소 원인을 엔저 현상 등 수출대상국의 내적 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수출 품목의 문제, 현지 식생활 패턴 변화의 문제 등 국내 내부 부진요인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 할랄시장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반 구축 및 인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농식품 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수출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같은 할랄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기존 할랄 문화권의 식품수출전략과 할랄시장 수출확대전략의 총괄관리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수출국 현지 인증제도 및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현지화된 고품질, 고가의 제품, 중저가 제품을 차별화하는 등 수출대상국별 기존 수출시장 관리와 신규 수출시장 확대 전략이 부족하였음

□ 농식품 수출대상국의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대상국들의 검역 및 원산지 표시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를 들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대상국과의 검역 협상 및 비관세 장벽 개선 전략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수출대상국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과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수입통관절차로 인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부담 해소와 함께 필요한 농식품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은 식품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수출무역망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율적인데 식품산업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FTA 체결국의 식품시장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부진함

○ 2015년 농식품 수출액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FTA 체결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로의 수출이 협정 체결 이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다른 산업에 비해 농산물의 관세 철폐 등 FTA 특혜관세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10] 실제 활용률이 높은 EU와 미국의 수출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활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1]

- FTA 특혜관세활용률은 적용대상 품목 수출액대비 실제 적용된 수출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농식품 수출품목은 2013년 기준 22.8%였음
-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는 27.7%, 한·EFTA FTA는 78.5%, 한·ASEAN FTA는 3.9%, 한·인도 FTA는 0.3%, 한·EU FTA는 51.3%, 한·페루FTA는 26.6%, 한·미 FTA는 48.3%, 한·터키 FTA는 10.7% 수준임

10) 이병훈 등 3명, 「농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실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2권 제1호, 농식품정책학회, 2015, pp.89~110.

11) 그동안 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농업이 피해산업으로 인식되고 피해의 보상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체결국별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는 부족하였음

나. 수출품목의 다변화

□ 최근 3년간(2013~2015년) 개별산업진흥법으로 지원하는 농식품 품목의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인삼류는 12.8%, 김치류는 21.5%, 막걸리는 46.5%, 간장류는 16.8%, 녹차류는 32.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 제정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품목별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를 갖추고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들의 수출 전략 품목화 성과가 부진한 수준이었음

○ 한식세계화사업 및 외식산업 진흥과 연관된 한식의 재료 및 소스류(고추장, 간장, 된장, 식초 등)도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맛, 형태, 조리방법 등을 현지화한 가공식품의 개발 지원 등 향후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였음

□ 신선농식품은 생산량과 가격 면에서 계절적인 유동성이 크고, 포장, 유통, 보관 시 비용이 많이 드는데, 2012년 이후 채소종자와 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의 수출 증가는 농식품 수출 품목 다변화의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지 공동물류센터 운영, 냉장유통체계 지원사업 또한 신선식품의 품질 관리와 향후 신선식품의 수출품목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 또한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지 시장 기반을 조성하므로 신선농식품의 수출 증가와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수출품목 수의 증가와 함께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들 사업은 주로 원료구입대금 융자 및 대출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출 증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산 농식품을 일정비율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구입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융자 및 대출하는 이자를 낮추고, 지원 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한 조치는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체질 개선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같은 품목이더라도 경제수준이 높고 한국산 식품 구매수요가 있는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원료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가격을 차별화한 품목 발굴과 상품화 전략 추진이 부진한 상황임

○ 농식품 수출의 확대는 우리 농업 구조상 양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가공식품의 원재료의 국산 농식품 사용량을 증대하는 등 수출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기초로 국내산 원료사용량 증가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 수출 인프라 지원의 다양화

□ 해외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수출시장 개척 역량을 키우고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병행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자금 지원이라는 유인효과를 내어 2012년

이후 영세한 농식품 수출기업수의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됨

- 전체 농식품 수출기업체 9,378개소 중 2015년 수출금액이 1백만 달러 이하인 업체 수는 8,428개소(89.9%)로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임([표 13] 참고)
- 연 수출금액이 1백만 달러 이하인 업체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9%에 그치고 있었음

[표 13] 농식품 수출기업 현황(2015년)

(단위: 개소, 백만 달러, (%))

구분	전체	1억 달러 초과	1억~천만 달러	천만~1백만 달러	1백만~1만 달러	1만 달러 이하
업체수	9,378 (100)	11 (0.1)	108 (1.1)	831 (8.9)	5,100 (54.4)	3,328 (35.5)
수출 실적	8,030.5 (100)	1,914.1 (23.8)	2,742.8 (34.2)	2,494.2 (31.1)	870.3 (10.8)	9.1 (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농식품 수출 확대 결과」, 2016.5.23.

□ 관련 기업의 영세함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 국가별 비관세장벽 및 해외 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평가되며,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됨

라.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내실화

□ 해외 마케팅 및 홍보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기업의 국제식품박람회 참여 지원과 ‘글로벌 K-Food Fair’ 개최가 주요사업인데 이중 글로벌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 수출 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표 14] 참고)

○ 그러나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 증가율'의 목표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목표달성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실적과 투입 인프라(예산, 인력 등)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임

- 2014년도 목표치는 10.0%였으며, 실적치는 5.8%로 달성률은 58.0% 수준이었음

[표 14] 글로벌 K-Food Fair 개최국의 수출실적 증가율(2013~2014년)

(단위: 백만 달러, %)

개최지역	2013	2014	증감률
중 국	947.5	989.0	4.4
ASEAN	985.1	1,054.0	7.0
홍 콩	346.0	368.8	6.6
합 계	2,278.6	2,411.8	5.8

주: 아세안(ASEAN)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임

자료: 정용제,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7., p.45.

□ 해외상설전시장의 경우 농식품의 전시비율이 낮은 것은 냉장, 냉동시설 등 공산품에 비해 제품의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나 그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수출 국가별로 현지의 식문화나 식품 유통체계에 맞춘 농식품 전시 형태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됨

□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홍보사업의 내실화가 필수적인데, 시정조치결과보고는 개최횟수, 이용자수, 참여기업수 등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예산의 증가에 비해 농식품 수출효과는 낮아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12] 향후 이들 사업 추진 시 농식품 수출 증대효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수출증대 효과는 예산 증

액 등 사업 확대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감 시정요구사항 중의 하나인 무역전시관 등의 농식품 전시비율 증가와 신선식품 전시비율 증가는 공산품과는 다른 식품의 특성[13]을 반영한 시설 설비, 운영관리 구조가 개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해외상설전시장에서 농식품의 전시비율이 낮은 것은 냉장, 냉동시설 등 공산품에 비해 제품의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나, 그 원인 분석이 미흡하며 수출대상국별로 현지의 식문화나 식품유통소비체계에 맞춘 전시 형태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 마지막으로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조치 처리결과의 보고를 할 때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계량화하여 명확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할 것임

○ 시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작시기와 완료시기,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규모와 확보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 결과보고는 성과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이행여부(건수, 참여 기업 수 등 과정지표)보다는 결과가 반영된 성과지표로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것임

---

12)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 수출촉진사업 예산이 국내 농식품수출기업 지원은 융자 및 대출사업 형태이며 지원금리가 높아 집행률이 낮고,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주로 홍보비로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해외 현지화가 가능한 전략 품목 개발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13)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운송이 필수적이므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물류망 구축 등 물류 기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임

Ⅳ. 개선방향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문제점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인프라의 강화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시장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1. 수출대상국 및 품목의 다변화

□ 첫째, 농식품 수출대상국가 확대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액의 증대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에 앞서 일본 등 기존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 규모 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수출 회복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류 문화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식문화를 가진 지역단위의 접근전략은 농식품 수출 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류문화 확대와 연계하여 문화적 접근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은 식품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수출무역망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므로 식품산업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FTA 체결국의 식품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임

○ 농식품 수출의 성과가 국내 농업의 무역수지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품목 개발 및 발굴 등 수출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신선식품 수출은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지 공동물류센터 운영, 냉장유통체계를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기

업의 공동이용이 용이하도록 신선식품 수출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넷째,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 또한 한국산 식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현지시장 기반을 조성하므로 연도별 가공식품의 수출현황을 기초로 국내산 원료사용량 증가가 가능한 품목을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할 것임

○ 같은 품목이어도 국내산 원료, 친환경 인증 원료 사용 등 가격대별 품목 발굴과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수출인프라 지원의 다변화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식품산업진흥법」과 별도로 제정된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산업, 차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의 수출 지원 규정이 실제 국내외 수출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식품산업진흥법」, 그리고 인삼산업, 김치산업, 쌀 가공산업, 전통주산업, 차산업 등의 지원 법률들이 단순히 관련 민간조직과 부서별 형식적 예산 지원의 근거 활용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야 함

○ 인삼과 김치의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식품규격을 등재한 이후 세계적인 인지도와 수출이 증가한 경험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국내산 신선식품과 전통발효식품의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농식품 수출촉진사업은 일본의 해외 식당진출사업과 같이 현지 외식산

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류 문화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산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전략을 활성화하여야 함

□ 둘째, 대출 및 융자위주의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다양화하여 전략품목 개발과 상품화 등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공동브랜드 및 공동운영기금 운영 등 수출역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들의 개발비용, 설비투자비용, 검역 및 통관단계의 수출비용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중복되는 수출인프라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셋째, 국내 수출 농식품 생산 및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대행업체, 현지식품유통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높은 비관세 장벽, 수출대상국별·지역별로 다른 수입・통관제도로 인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응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14]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위해 수출국의 소비대상에 따른 품목 개발과 식문화가 유사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품 개발이 시급하므로 식품유형 연구개발, 포장기술, 디자인 등 전방산업과의 연계를 적

14) 주요 수출국의 위생·검역·통관 등 비관세장벽 강화 및 국가별·지역별 상이한 수입·통관 절차로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크다는 점임. 최근 농식품 수출국가들의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비관세장벽문제는 중국의 라벨링 표시기준 강화(2013.6)와 수입유제품 검역조치 강화('204.5),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2011.1), 홍콩의 수입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 기준 제정·시행(2014.8), 인도네이사의 수입 신선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2016.2) 및 할랄인증 의무화(2019) 등임

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넷째, 농식품 수출 다변화는 수출금액 중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농식품 수출의 목표와 비전을 재정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세계 각국은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이유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로컬푸드, 친환경 식품 등 자국 내에서 생산된 식품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고 소비자들도 건강, 안전, 환경 측면에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업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증대와 국내 농산물 원재료 사용 등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15)]

○ 농식품 수출목표는 성장 일변도의 수치 중심에서 수출성과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계획된 미래 농업의 생산 규모와 식품 수요에 맞추어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평가도 수출품목별·수출시장별로 세분화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3.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의 내실화

□ 첫째, 해외시장 홍보사업을 단순 전시에서 현지 판매체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임

○ 수출 성과(수출 물량 및 품목 확대, 신규시장 개척, 시스템 구축)에 근

15) 배민식·장영주, 「농식품 수출 현황과 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제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4.19.

거한 예산 운용과 농식품 해외홍보전시관 운영의 전문성, 상시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해외 농식품 상설전시장은 한국의 전통 및 현대의 식문화를 동시에 홍보하고, 현지 식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조리방법을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등 현지식품마케팅의 중심이 되도록 기능을 재편하여야 함

- 단순히 해외 현지에 한국의 농식품을 홍보하고 현지인에게 한국 식품의 체험을 늘리는 목적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출계약을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현지 판매체계와의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관련인프라를 확대하여야 함

□ 둘째, 상설전시장의 제품 다양화 및 판매 전략 구성, 수출국 현지의 식품유통및 외식업체와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KOTRA와의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지사는 7개국 12개 지사[16]에 불과하므로 KOTRA의 126개 해외무역관의 무역 전문인력과 현지 수출망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임

16) 2016년 8월 현재 미국 LA와 뉴욕,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중국(베이징/칭타오, 청뚜, 상하이, 홍콩), 일본(도쿄, 오사카), 베트남 하노이(방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음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각 연도.

국회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각 연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근 3년간(2012~2014년도) 국정감사 이행 상황 분석」, 2015.9.

김경필,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과제」,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제17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김경필 · 한정훈,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 연구보고 R7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2016.

농림축산식품부,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안)」,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 희망찾기 플랜(2013~2017)」, 2013.

대한민국 정부,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배민식 · 장영주, 「농식품 수출 현황과 과제」, 『지표로 보는 이슈』 제5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4.19.

이병훈 등 3명, 「농식품 수출업체의 FTA 활용실태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2권 제1호, 농식품정책학회, 2015.

이상현 · 어명근 · 정대희 · 안수정 · 윤영석, 「FTA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증대 전략 연구」, 연구보고 R7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정용제,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평가」, 사업평가 16-11(통권 363호), 국회예산정책처, 2016.

정정길 · 이상현, 「한중 FTA, 수출증대의 기회로」, 『2016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조윤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NABO, 국회예산정책처, 2013.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정책 방향」, 20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5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201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실태조사」, 2013.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http://www.kati.net

[부록 1] 식품산업별 수출 촉진 관련 규정

□ 인삼산업은 「인삼 산업법」 제20조의2에 수출 촉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인삼 산업법」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김치산업은「김치산업 진흥법」제17조에 세계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김치산업 진흥법」
제17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전통주산업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세계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차(茶)산업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 세계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육성, 차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차 및 차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쌀 가공산업은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세계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친환경 식품산업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의 수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 외식산업[17]의 수출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은「외식산업 진흥법」으로, 동법 제9조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음

「외식산업 진흥법」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외식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참가
3. 외식산업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
4. 외식산업 수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7)「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에서 "외식"이란 가정에서 취사(炊事)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로,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수입·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부록 2]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련 국감 시정조치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알리바바 등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추진 인력이 부족하므로,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전담인원 확충 및 예산 증대 ○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전담인원 증원 - ('15) 1명 → ('16) 2명 ○ 온라인 홍보판촉 사업 예산 증대 - ('15) 8억 → ('16) 15억 (↑87%) <향후 추진계획> □ 모바일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 ○ 중국에서 파급력이 높은 SNS(위챗)를 활용한 한국 식품 판매 및 홍보 □ 주요 수출국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 유력 온라인 쇼핑몰 발굴 및 연계마케팅 강화 - ('16) 11개국 17회 실시 예정 □ 대중국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강화 ○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구축 - 신규 및 유망 한국식품에 대한 맞춤형 바이어 거래 알선 지원
알리바바 티몰 한국관 개설 및 입점관련 가공식품 보다는 신선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가공식품의 입점 확대 필요	<시정·처리결과> □ 신선농산물 및 국내산 원료 가공식품 입점 확대 ○ 중국 온라인 쇼핑몰 2위 업체인 징동과 식품전문 온라인 쇼핑몰 워마이왕에서 우유 등 유제품 및 쌀을 입점하여 판매 진행 <향후 추진계획> □ 수출검역협상 타결 신선농산물 입점 확대 실시 ○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된 포도와 함께 협상진행 중인 파프리카 등 생산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별 검역협상이 타결된 이후 입점 추진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할랄시장에 우리나라의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할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수출지원 필요	<시정·처리결과> □ 동남아 및 중동 이슬람 거점지역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사 및 UAE 아부다비지사를 통해 현지 할랄시장 개척 지원 □ 할랄시장정보조사 완료(‘16.2월)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이아(총 4개국) □ 할랄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이란 신시장 개척 통합마케팅」 추진 ○ 이란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16.5.2) - 상담규모 : 25업체(수출업체7, 수입바이어18) ○ 현지 유력바이어 MOU체결(‘16.5.1) - 대형유통업체(1) : Refah Supermarket - 바이어(2) : Arad Group, Golriz Negar Qeshm ○ 소비자체험행사(쿠킹클래스) 실시(‘16.5.1) - 김치 담그기 및 김밥 만들기 체험 ※ GCC 국가로의 우리 농식품 수출실적은 7.5% 증가 - (‘14) 356백만불 → (‘15) 382 / 전년대비 7.5%↑ * GCC(걸프협력회의) :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향후 추진계획> □ 할랄시장에 대한 ①심층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에 제공, ②농식품기업의 할랄인증취득비용 지원, ③할랄식품박람회 참가, 판촉행사 지원 등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할랄시장 개척 추진 ① 할랄시장정보조사: 이란, 이집트 ② 할랄인증비용지원: 소요비용 90%한도,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한도(예산 : 20억원) ③ 할랄 해외마케팅 - 국제박람회(5회) : UAE, 말련, 터키, 인니, 사우디 - 안테나숍(4곳) : 인니(1), 말련(1), UAE(2) - K-Food페어(3회) : 말련, 인니, UAE - 판촉행사 지원(약26회) : UAE, 이란, 말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식품무역전시장이 수익성을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되므로 대기업 행사나 명품옷 전시 비율이 65%가 넘는 것은 시정할 필요	<시정·처리결과> □ 최근 3년간('13년~'15년) 농식품 전시행사 비율은 평균 40%, 비농식품 전시행사도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며 대기업, 유명의류 관련 전시행사 비중은 매우 낮음 □ 금년부터는 농식품을 제외한 대기업 명품옷 전시행사 예약을 받지 않아 '16년 5월 현재 실적 없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농식품을 제외한 대기업 명품옷 전시를 지양하고, 농식품 관련행사를 최우선으로 배정 □ 농식품 행사유치를 위한 관련 단체·협회·지자체 대상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 적극 노력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5년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보고서」, 2016.6.을 정리함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2016.9.7.	김여라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2016.9.7.	정준화 송시현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9.7.	정도영
제4호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2016.9.7.	조규범
제5호	ICT 규제개선 추진실적 평가와 대응방향	2016.9.7.	심우민
제6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6.9.8.	최병근
제7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개선방안	2016.9.8.	이동영
제8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2016.9.8.	조숙희
제9호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2016.9.8.	배재현
제10호	아이돌보미의 처우수준과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관련 현황과 개선방안	2016.9.8.	조주은
제11호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2016.9.12.	조인식
제12호	지방공기업 개혁 및 제도 개선방안	2016.9.12.	류영아
제13호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2016.9.12.	이승열
제14호	재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	2016.9.12.	김종갑 임채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평가 및 개선방향	2016.9.12.	전형진
제16호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6.9.22.	강지원
제17호	건강영향조사의 개선 방안	2016.9.22.	이혜경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18호

발 간 일	2016년 9월 22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9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1491-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ISSN 2508-4240

NARS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내역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국정감사 이전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